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2. 1



일러두기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노사 모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 하였습니다.
- 매뉴얼에 수록된 질의 회시 중 일부는 법률개정 등으로 현 제도와 부합하도록 당시 회시 내용이나 표현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별표 9]

Contents

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1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37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69
IV.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79
[부 록]	9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발체)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계 비교	
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5.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6. 원하청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실무회의 운영 사례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 회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에 관련 사항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타사항	



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의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비교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협의체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종류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Part 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01 제도 연혁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법(1981.12.31.) 제16조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차 개정(1990.1.13.)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하도록 함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제3차 개정(1996.12.31.)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동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함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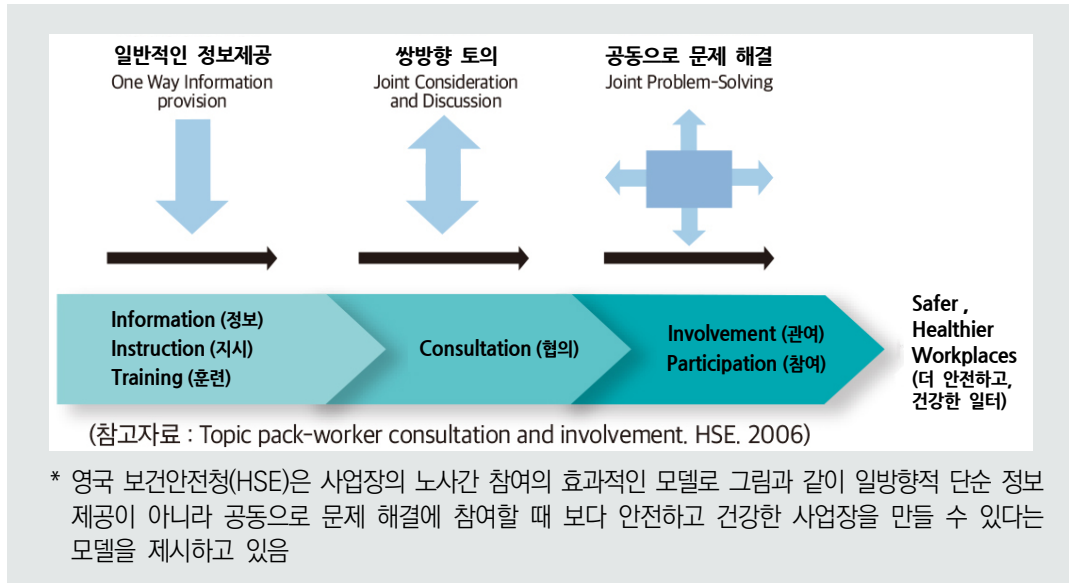
- 제8차 개정(2006.3.24.)에서 노사자율의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단서를 삭제하고 노사협의회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

02 제도의 의의

1.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예방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산업재해는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기 때문임
-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국가들도 사업주가 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실제 근로자의 협의와 참여가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¹⁾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산재 발생률과 직업적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함



- 특히, '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중에 하나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의의

- (개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임

1) 유럽 31개 국가의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대표들을 대상으로 유럽 기업들에게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조사(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 ESE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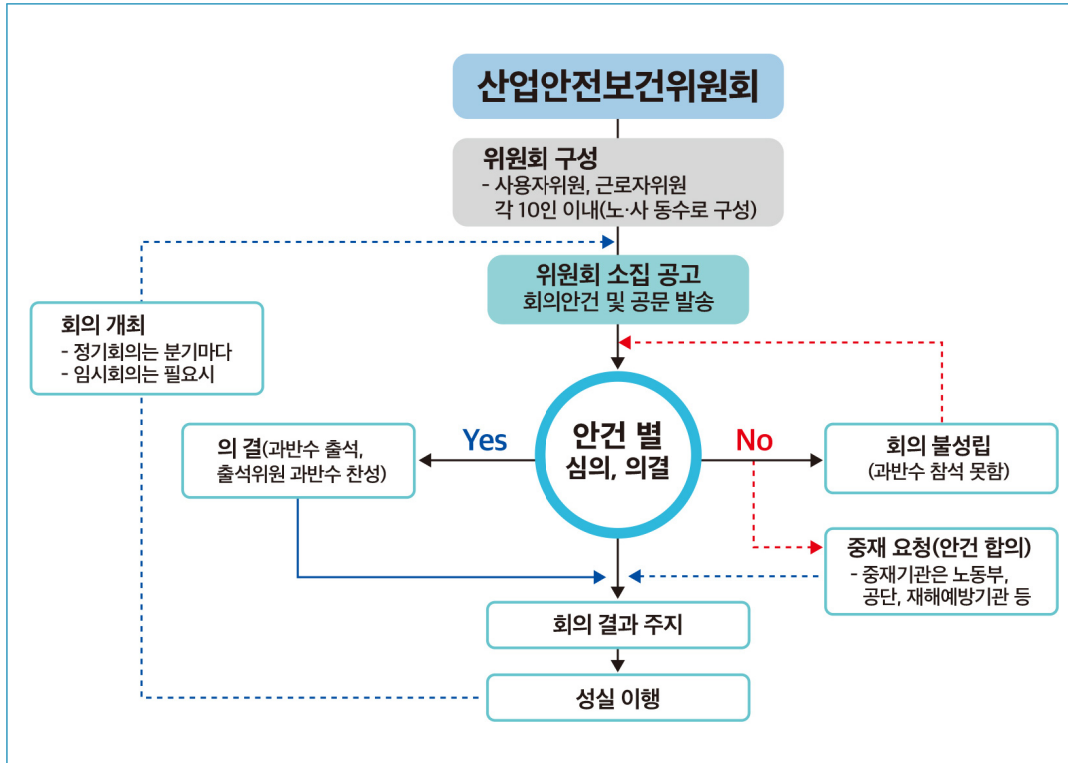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 장점

-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현장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소통기구로 작동함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노사공동의 노력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 및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구성 및 세부운영 흐름도



0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비교

1. 노사협의회 개요

- **(법적 정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3조(정의)제1호
- **(역할 및 기능)** 안전 보건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경영 관련 사항까지 포괄하는 노사 간 협의 및 의결기구
- **(설치 대상)**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

2.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기(3개월)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안전은 심의(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으로 구분됨
- **(차이점)**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00인 이상(유해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대상 규모 등에 있어 차이가 남
* 양 제도의 유사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차 개정(1990.1.13.)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같음하도록 하였다가 제8차 개정(2006. 3.24.)에서 노사자율의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단서를 삭제하고 노사협의회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노사협의회와는 다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가 노사 동수로 참여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문제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사업장 내 자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제도 비교 】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근거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
설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유해위험 업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건설업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농어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단위 (전 업종)
협의 또는 의결 사항	<p><의결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의결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p><협의 또는 의결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지만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 사항(근참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0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성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 사항을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
 - 이러한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종사자의 의견이 사업장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함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7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동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근로자의 참여를 위한 실행전략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부)」 ‘근로자 참여’ 부분 참조

- 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
- 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중대해재처벌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중대산업재해</p> <p>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생략)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9.(생략)</p>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동법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 사항임

내용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④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의의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아래의 9가지로 구성하고 있으며,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입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이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은
 -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 해당하는 사항임

4.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 의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두도록 한 것임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이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와 같은 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있음

☞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협의체 부분에서 상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대 핵심요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부, '21.8월)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참여” 체계를 마련하는 핵심 기구임 - 또한 이러한 “근로자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전체 근로자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함

1	경영자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2	근로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	위험요인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작업을 파악합니다.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0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협의체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의의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도급협의체’라 함)

✓ 도급협의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구성·운영하여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대상

-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 도급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3항)

* 별도로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음

- ✓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도급인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하도록 함(법 제6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

❏ 협의사항

- ① 작업의 시작 시간
-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③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④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 위 협의사항들은 모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동시 작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작업을 회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2.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의의

-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 공사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말함 (이하 ‘건설 노사협의체’라 함)

대상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시행령 제63조)
- * 위 건설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요건)은 건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과 동일

❏ 건설 노사협의체 구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아래표 참조)

구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필수 구성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합의 구성 ¹⁾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⑤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합의 참여 ²⁾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1)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사람
- 2)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협의체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

❏ 건설 노사협의체 운영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함
- 노사협의체 위원장 선출, 회의, 의결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준용함

❏ 심의·의결 사항

- 건설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함

✓ 법 제75조제3항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 건설 노사협의체 구성원은 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법 제75조제6항)

❏ 협의 사항(시행규칙 제93조)

- ①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②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③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구성·운영의 특례(법 제75조제2항)

-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 제1항제1호)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봄

✓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됨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운영할지는 당해 현장의 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임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21.1.18, 기획재정부)

의의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이하 “원청업체”)이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이하 “하청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구성·운영하는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

-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을 말하며, 매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기관을 확정함
- ✓ '21년도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 공공기관 지정유형: ▲공기업 36개소, ▲준정부기관 96개소, ▲기타 공공기관 218개소

근거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 관계부처 합동)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1.1.18., 기획재정부) 제12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1.1.18., 기획재정부)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고용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의 내용은 고용부 지침에 따름

❖ 적용대상

-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아래)에 따른 지정기관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3.~4.(생략)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 ② ①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③ ②의 사업(장) 중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

*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회 구성방법

- 원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하청업체 노사대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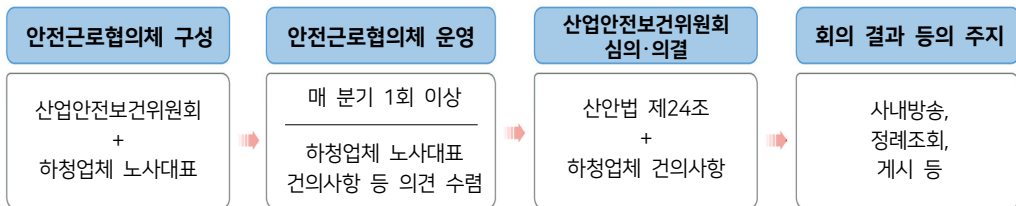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제외

* 3개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회 운영방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되,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 (회의개최) 매 분기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운영
- (하청업체 노사대표의 역할)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① 개선요청 사항, ② 애로·건의사항, ③ 차별 등 의견 개진 및 개선요청
 - 원청업체는 ①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산재예방계획, ② 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③ 수급인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을 포함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되, 건의사항 등이 의결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참고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제도 비교

0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75조제5항제1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의무사항

- (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적(분기마다)으로 개최하여야 함 (시행령 제37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75조제5항제1호)

- **(회의록 작성·보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 회의록에는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4호)
- ✓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2년임(법 제164조제1항제2호)

-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75조제5항제1호)
- * 다만,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의무는 근로자에게도 부여되며, 근로자가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됨(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35) 】

구 분	해당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10	20	30

0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종류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 9)
- 다만, 1차 금속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구성 대상이 됨(시행령 별표 9)

-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근로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을 모두 포함하며,
- 파견이나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29736 판결)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거나 1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위원회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토목공사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함

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공공행정,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 1)

참고

부록 3. 공공행정 업무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제정]

- 따라서 위 사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시행령 별표 9 제21호)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음(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이 제외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특례(법 제75조제2항)

-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시행령 별표 9)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0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법 제24조제2항)

-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제26조)
- ③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29조)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125조)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29조 등)
- ⑥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3호)
- ⑨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24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제2항)
-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항)
-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법 제125조제7항)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는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법 제141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심의·의결 관련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 됨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1. 위원회 구성 준비
2. 운영규정 마련
3. 구성원칙과 위원장 선출 등
4. 근로자위원 구성
5. 사용자위원 구성
6.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7.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8.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특례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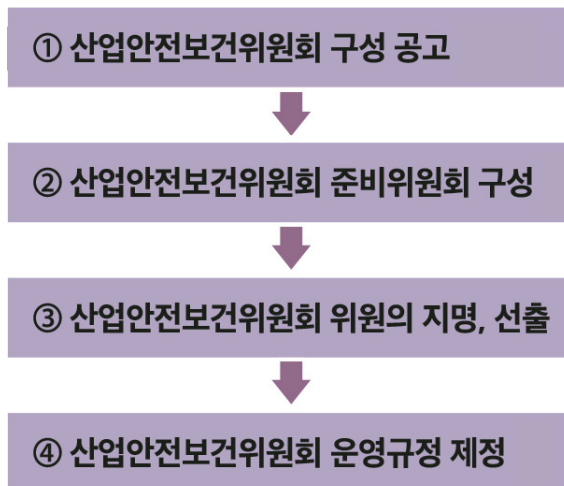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01 위원회 구성 준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위원회 구성 공고, ② 준비위원회 구성, ③ 위원 지명, ④ 운영규정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 위원회의 의미·구성에 필요한 사항·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

- ✓ 구성 사유는 상시근로자 수 충족, 경영상 필요성 인식, 노·사의 설치 요구 등이 있음
- ✓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위원회의 필요성, 사업장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비전, 위원들의 역할 등을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더라도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 이는 위원회 설립 초기에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각이 없었기 때문임

- ✓ 구성 공고 시기부터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구성 공고(무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노동자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준비위원회는 인사·총무팀 실무진과 각 부서별 참여자 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과 부서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부서별 참여자 1명씩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서별 참여자는 부서장을 제외한 직급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구성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위원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② 구성공고(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

평소 우리 노동조합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노동자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귀 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 지명에 앞서 우리 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인사·총무팀 실무진과 귀 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향후 우리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위원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귀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② 준비위원회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규정 등을 작성하기 전에
 -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을 부서별로 균형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 여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면 될 것임

- 구성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함
- 준비위원 구성이 반드시 노·사동수일 필요는 없음. 대신 가급적 전 종업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위원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준비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토론하며 향후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등을 정할 수 있음

③ 위원 구성의 준비

-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방법 등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과 절차를 논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가급적 1~2개월의 범위에서 빠른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원칙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과 검토를 통해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안)으로 정리

🔍 실무적으로 노·사 간에 준비과정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 ▲ 회의 참여자(위원 수 결정) : 안전·보건관리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명시하며, 위원장을 공동으로 또는 번갈아가며 맡는 것 등에 대하여 결정
- ▲ 회의 주기 :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실무협의에 대해 별도로 결정
- ▲ 심의·의결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
- ▲ 위원의 권한과 책임 : 위원의 활동내용은 안건의 준비, 회의참여, 회의결과의 보고, 교육 등으로 정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활동보장을 명시하는 것

02 운영규정 마련

🎯 운영규정 준비 및 포함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노사위원의 구성방법·위원의 신분 보장·회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자율로 정함

✓ 그러므로 노·사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리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마련된 운영규정은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 운영규정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 위원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되도록 함

참고

부록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될 기본 사항

- ①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24조제2항, 건설업의 노사협의체는 법 제75조제5항의 사항 포함)
- ② 위원회 위원수
- ③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기, 의결 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도급사업 시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
-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구성 예시 】

구분	세부 사항	담겨야 할 내용
제1장 총칙	1. 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념과 목적, 용어의 정의 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에 대한 최고의 의결기구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최우선의 정책이자 사업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와 직원의 환경, 안전,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의논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함 발생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어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
제2장 구성	1. 위원회 구성	위원의 수, 노·사 대표의 참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 간사의 지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자격 등
	2. 위원회 직무	위원장, 위원, 간사의 직무
	3. 위원회 권한과 의무	교육받을 권한과 의무, 안전수집을 위해 현장순회를 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권한과 성실히 안전수집을 해야 할 의무, 위험 상황에서 직업을 중지할 권한과 작업중지사의 조치에 관한 의무 등
	4. 심의·의결 사항	심의·의결 사항(법에 정해진 내용 포함)
	5. 위원회 활동 보장	위원의 활동 범위에 대한 정의, 활동시간에 대한 유급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제공 등
	6. 불이익 금지	위원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없음에 대한 명시
제3장 운영	1. 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실무회의의 정의와 회의주기, 회의 소집 절차, 그 밖에 회의 운영 관련 사항 등
	2. 의결	의결절차(기급적 합의에 의해 의결하되 전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과반 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의결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중재절차
	3. 회의록 작성	회의록의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 및 보관방법
	4. 보고	회의 결과의 공지

03 구성원칙과 위원장 선출 등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결정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함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함(법 제24조제1항)

-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문제를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노·사의 균형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의견의 민주적인 집약이 어렵고, 또한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어려움
- ✓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회의의 개의·의결 정족수 및 사용자위원 측의 구성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사업장의 조직과 인력 구성 현황에 맞게 구성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며, 사업주는 특정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거나 선출방식을 정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구성에 개입하지 않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함

[시행령]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노사동수 원칙을 고려하여 위원장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함

- ✓ 간사는 각각 노사를 대리하여 회의 소집, 안건자료 등 회의의 준비와 사후 처리를 담당하도록 함
- ✓ 위원회 운영의 성패는 어떠한 안건을 어떤 절차로 다룰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다루기 곤란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간사 간 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음

04 근로자위원 구성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법 제2조제5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실체를 '사람'으로 규정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됨

✓ 해당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됨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방법·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여 선출함

✓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 외에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자율적 합의에 따라 다수득표자 선출 등)으로 선출함

✓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설 이용,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 활동 및 투·개표 시간 할애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위원과 협의하여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의 편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법 제23조제1항)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여야 함

- ✓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4조)

- ✓ 소수노조 조합원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도록 배려가 필요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위원에서 그 수를 제외하고 지명하여야 함(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

05 사용자위원 구성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해당 사업의 대표자

- 대표이사 등 직위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위원 측의 대표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함
- 다만, 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구성

안전관리자 1명

-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보건관리자 1명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산업보건의

- 산업보건의를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만 한정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됨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가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중 의사가 없으면 보건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	50~	100~	300~	500~	1000~	4000~	5000			
					49	99	299	499	999	3999	4999	이상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		농업		■▲	■▲	■▲	■▲	■▲▲	■▲▲	■▲▲▲			
		02		임업		■▲	■▲	■▲	■▲	■▲▲	■▲▲	■▲▲▲			
		03		어업		■▲	■▲	■▲	■▲	■▲▲	■▲▲	■▲▲▲			
B	광업 (05~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			
		06		금속 광업		▲	▲	▲	▲▲	▲▲	▲▲	▲▲			
		07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	토사석 광업		■▲	■▲	■▲	■▲▲▲	■▲▲▲	■▲▲▲	■▲▲▲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	▲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34)	10		식료품 제조업		■▲	■▲	■▲	■▲▲	■▲▲▲	■▲▲▲	■▲▲▲			
		11		음료 제조업		■▲	■▲	■▲	■▲▲	■▲▲▲	■▲▲▲	■▲▲▲			
		12		담배 제조업		■▲	■▲	■▲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	■▲	■▲	■▲	■▲▲▲	■▲▲▲	■▲▲▲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	■▲	■▲▲▲	■▲▲▲	■▲▲▲	
				133		편조 원단 제조업		■▲	■▲	■▲	■▲	■▲▲▲	■▲▲▲	■▲▲▲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	■▲▲	■▲▲▲	■▲▲▲	■▲▲▲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	■▲	■▲▲▲	■▲▲▲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	■▲	■▲	■▲	■▲▲▲	■▲▲▲	■▲▲▲	
				142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143		편조의복 제조업		■▲	■▲	■▲	■▲	■▲▲▲	■▲▲▲	■▲▲▲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	■▲	■▲▲▲	■▲▲▲	■▲▲▲	
				1449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	■▲▲	■▲▲▲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11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	■▲	■▲▲	■▲▲▲	■▲▲▲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	■▲	■▲▲▲	■▲▲▲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3999	4000~4999	5000 이상	
		152	신발 및 신발 부품 제조업			■▲	■▲	■▲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	■▲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	■▲▲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32	가구 제조업			■▲	■▲	■▲	■▲▲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	■▲	■▲	■▲	■▲	■▲	■▲▲
					3512	송전 및 배전업	■▲	■▲	■▲	■▲	■▲	■▲	■▲▲
					3513	전기 판매업	■▲	■▲	■▲	■▲	■▲	■▲	■▲▲
		35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	■▲	■▲	■▲	■▲	■▲	■▲▲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	■▲	■▲	■▲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36		수도업	■▲	■▲	■▲	■▲	■▲	■▲	■▲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	■▲	■▲	■▲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	■▲	■▲	■▲	■▲	■▲▲
				382	폐기물 처리업	■▲	■▲	■▲	■▲	■▲	■▲	■▲▲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3999	4000~4999	5000 이상	
F	건설업(41~42)	1)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1조원 이상까지 공사금액 기준으로 인원기준 상(1명 이상~11명 이상) 2)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3) 산업보건의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1명의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											
G	도매 및 소매업(45~47)				■▲	■▲	■▲	■▲	■▲	■▲	■▲	■▲	
H	운수 및 창고업(49~52)				■▲	■▲	■▲	■▲	■▲	■▲	■▲	■▲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	■▲	■▲	■▲	■▲	■▲	■▲	
J	정보통신업(58~63)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	■▲	■▲	■▲	■▲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	■	
		60	방송업		■▲	■▲	■▲	■▲	■▲	■▲	■▲	■▲	
		61	우편 및 통신업		■▲	■▲	■▲	■▲	■▲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64~66)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	■▲	■▲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21	부동산 관리업		■▲	■▲	■▲	■▲	■▲	■▲	■▲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	■▲	■▲	■▲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70	연구개발업		■▲	■▲	■▲	■▲	■▲	■▲	■▲		
			전문 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	■▲	■▲	■▲	■▲	■▲	■▲	■▲			

부동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3999	4000~4999	5000 이상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	■▲▲	■▲▲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	■▲	■▲	■▲				
O	공공 행정(84)					■▲	■▲	■▲	■▲	■▲▲	■▲▲	■▲▲▲				
P	교육 서비스업 (85)	85	교육 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	■▲	■▲	■▲	■▲▲	■▲▲	■▲▲▲		
				852	중등 교육기관			■▲	■▲	■▲	■▲	■▲▲	■▲▲	■▲▲▲		
				853	고등 교육기관			■▲	■▲	■▲	■▲	■▲▲	■▲▲	■▲▲▲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	■▲▲	■▲▲	■▲▲▲		
				855	일반 교습학원											
		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 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 기관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 기관									
						85614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업		■▲	■▲	■▲	■▲	■▲▲	■▲▲	■▲▲▲	
				8562	예술학원											
				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8564	사회교육시설											
				8565	직원 훈련기관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3999	4000~4999	5000 이상						
		857	교육 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86	보건업			■▲	■▲	■▲	■▲	■▲▲	■▲▲	■▲▲▲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11	경기장 운영업		■	■	■	■	■▲	■▲	■▲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	■▲	■▲	■▲▲	■▲▲	■▲▲▲		
				91122			스키장 운영업		■	■	■	■	■▲	■▲	■▲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	■	■▲	■▲	■▲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	■	■▲	■▲	■▲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4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 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	■▲▲	■▲▲	■▲▲	■▲▲▲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	■▲▲	■▲▲	■▲▲	■▲▲	■▲▲
								95213	자동차 세차업		■▲	■▲	■▲	■▲	■▲▲	■▲▲	■▲▲	■▲▲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	■▲▲	■▲▲	■▲▲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3999	4000~4999	5000 이상
		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	■	■	■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1	세탁업		■	■	■	■	■	■	■
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	■	■	■	■	■	■
9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	■	■	■	■	■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99)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 1조원 이상 11명 이상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 ▶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공무직, 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내용으로 결정됨)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06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위원의 신분 보장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4조제6항)

- ✓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해고, 배치전환, 강등, 임금삭감 등은 물론 승진, 승급 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불리한 처분을 말하며
- ✓ 사업주가 특히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문제 삼아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음

- 그 외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비상임·무보수로 하여야 할 것임

- ✓ 이는 신분상 중립과 업무수행 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 ✓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무 면제를 받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는다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비상임·무보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봄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 가령 야간시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각각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위원의 직무활동은 안전수집, 회의참여, 현장점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포함됨

- ✓ 이에 대해 효율적 회의 진행과 적극적 활동을 위해서도 충분한 유급 활동시간이 보장되도록 노·사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이므로 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

위원의 임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음

- ✓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결이나 결정이 없는 한 노동 관계법의 다른 예(노사 협의회)에 비추어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 ✓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간사의 임기 역시 위원의 임기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지명된 위원이 정해진 임기 동안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구성방법에 따라 보궐위원을 새로이 지명할 수 있음

- ✓ 이 경우 보궐위원을 새로 지명한 사용자측 또는 근로자측은 상대방에 대해 보궐위원의 지명 사유와 지명된 사람의 직위와 및 성명을 통보하여야 할 것임
-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면 될 것임

07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3. (생략)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5.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행령 제35조제3항)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청간 효과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①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제1항제1호)〉

-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9조제1항)
 - * 도급 : 명칭에 관계 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협의체는 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④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하여 협의해야 함(시행규칙 제79조제2항)
-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9조제3항)

08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및 시행령 [별표 9]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도급사업의 원청업체인 경우
 -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조의 규정(아래)에 따른 지정기관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요건〉

- ①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 ②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 ③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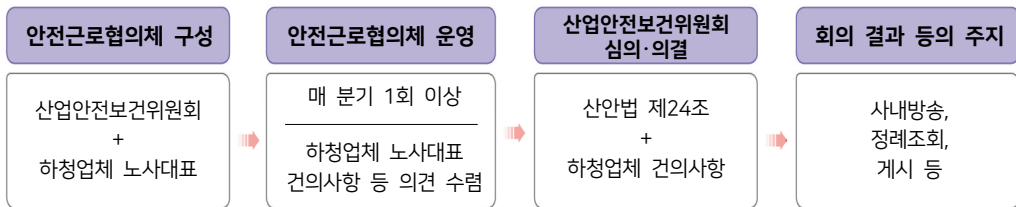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취지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건의사항이 원청업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아니하여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청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임

- 안전근로협의체는 원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에 하청업체의 노사대표를 함께 포함하여 구성하고 매분기 회의를 개최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흐름도 】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되,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하청업체 참여의 범위]

-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3개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제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 하청업체가 안전근로협의회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회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 불이익 신고 시 산업안전보건 감독대상 우선 선정

참고

부록 5.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회 구성·운영 지침

도급사업 시 원하청 참여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63조)
- 현장의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므로
 -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고

부록 6. 원하청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0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특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5조)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토목공사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함

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의무의 예외가 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각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함
 - ①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② **(사용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함
 - 공사금액 800억원이상(토목공사업 1천억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건설업

- ③ (협의 참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공사금액 20억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시행령 [별표 1] 아래 표 참조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노사협의체의 위원장 선출, 회의운영,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야 함

- 건설업 노사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건설기계의 범위 】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벙틀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공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시행령 [별표 1]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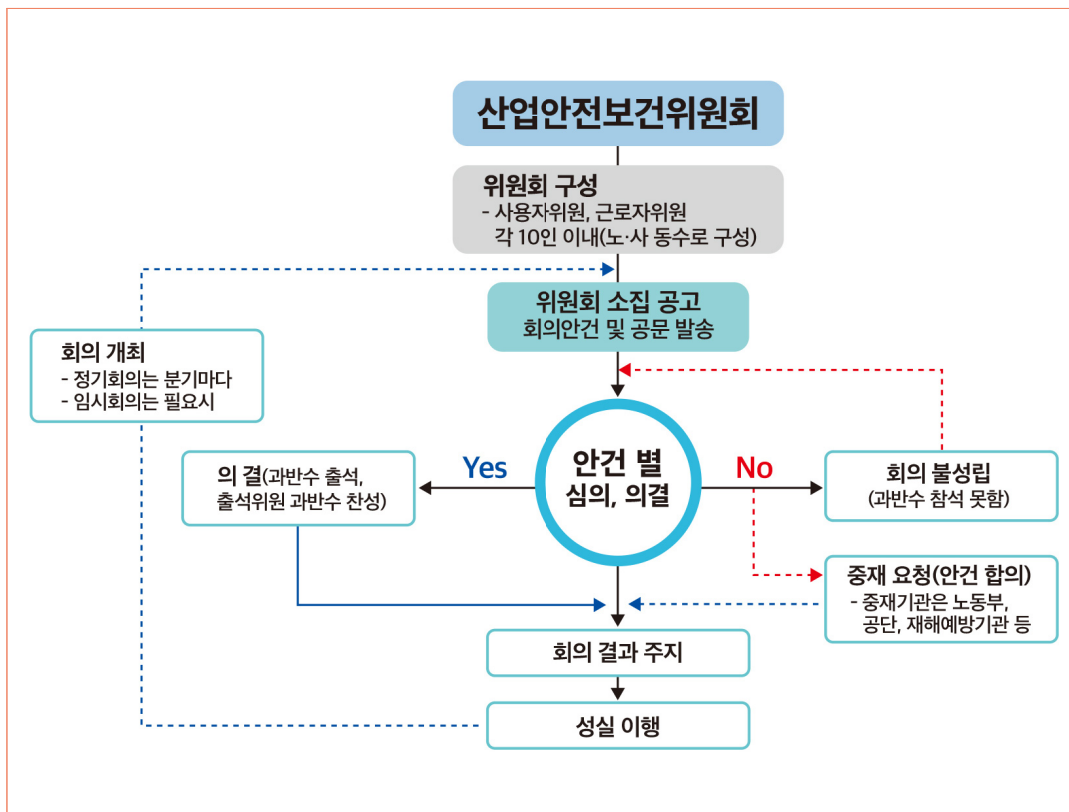
1. 운영 흐름도
2. 회의 개최
3. 회의록의 작성·비치
4.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5.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

Part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01 운영 흐름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더
요

02 회의 개최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일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개최일 최소 7일 전에는 개최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원활한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임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유사한 틀을 가진 노사협의회 역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소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회의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7일 전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 임시회의는 '중대재해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에 운영하도록 함(운영규정 예시 참조)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 그러므로 모든 회의에 모든 위원이 참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 다만,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노·사 어느 일방의 출석위원이 상대방에 비해 많더라도 상대방의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총수가 전체 과반수라 할지라도 회의는 성립되지 않음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노·사를 각각 대표하더라도 위원 각자는 주체적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근로자대표 등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37조제3항)

- ✓ 위원으로서의 직무 대리의 범위는 대참하는 당해 회의에 한정함. 직무 대리를 남용할 경우 회의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하므로 사업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그 성과가 커질 것임

- ✓ 사업의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논하여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짐. 회의가 몇 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게 되면 노·사 양측의 위원들이 실망하게 되고 위원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 ✓ 정당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회의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지정하여 불참하는 회의에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모든 회의에 대참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나 안전·보건관리자도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 안전·보건관리자는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만약 안전관리와 보건 관리를 외부에 맡긴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
- ✓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함

- 근로자대표나 사업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각 회의마다 참석자를 교체하여 지정하는 것도 금지됨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주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진행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 ○○○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

- ✓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남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됨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면 안되므로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과 회의 진행 및 심의·의결과정에서 이를 위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함

03 회의록 작성·비치

●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회의록은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임

- ✓ 회의록의 작성·비치 의무는 회의결과로 나타난 노·사 간의 산업 재해예방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남겨 둬으로써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회의록에는 회의의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 그 밖의 토의사항이라 함은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직전 분기 의결사항의 이행상황 및 위원회에서 즉석 안건 등으로 제출되어 논의한 사항을 말함
- ✓ 이 외에도 참석위원의 참석 여부(참석자 서명 등), 의결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와 처리기한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 집행을 더욱 견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음

-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164조제1항제2호에서 2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에서는 서류의 보존 기간을 통상 3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법 제24조제3항) 등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참고

부록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

04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은 중재 기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위원장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음. 그 결과 안전에 대해 가부 동수로 의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러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 기구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해결하여야 함

- ✓ 중재기구의 구성이나 제3자에게의 중재 요청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제3자에 대한 중재의뢰 규정을 상세하게 담는 방법이 있음

❖ 제3자 중재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함

05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

● 회의 결과 등을 공지하여야 함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 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공문, 사내 전산망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 산업안전보건활동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 공지의 의무가 사용자가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공지를 할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함
- ✓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공동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노·사 모두가 회의 결과 공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음

심의·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함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의결사항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은 담보되기 어려움

- ✓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내 산재예방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 ✓ 또한 노·사 간 불신 증대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우려도 있음

- 의결사항에 대하여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음

- ✓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경위를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그 결과를 사진 등 기록으로 남겨놓아 향후 증빙자료로 보관해 놓는 것이 좋음



IV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표명
2. 실무회의 운영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마련
4. 위원의 활동시간 보장
5. 위원의 전문성 확보
6. 노·사대표의 필수 참석
7. 정기회의 필수 개최
8. 회의 결과에 대한 빠른 피드백
9. 회의록 작성 및 관리
10. 주기적 평가와 개선

Part IV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01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표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함

-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과 보건의 확보는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참여하여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안전과 보건 문제를 다루고 심의·의결하는 공식적이고 중요한 소통기구임

-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이를 문서화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임
 - ✓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방침을 설정할 때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음
- * (경영방침 예시)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공고히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사업장 근로자대표 인터뷰-(주)OO케미칼(대전 대덕구)

▲ 공장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무재해 2,660일 달성 중인 사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사업장은 사용자대표인 공장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제기한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결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660일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02 실무회의의 운영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한 번의 회의에서 너무 많은 안건이 논의되고 경중이 다른 안건의 사전 조율이 없다면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장시간의 회의로 중요한 안건의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될 수 있음
-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안건을 정리하고 사전에 노·사간의 이견을 미리 조정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 실무회의를 통해 사전에 안건을 파악하고 회의자료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처리할 사안과 노·사대표가 함께 논의할 사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또한 실무회의는 노·사가 합의한 사안의 이행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특히, 비용 지출 규모가 큰 안건의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사전 실무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음

실무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사례-고무제조업, 유노조 사업장

- ▲ 조합측 2명(지부장, 노동안전부장), 회사측 2명(생산담당 임원, 안전보건팀장) 등 안전보건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본회의가 있기 전 3일 이내에 개최하여 안건을 정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의결안건의 이행률도 높음

참고 부록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실무회의의 운영 사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실무회의, 팀별 안전보건책임자 회의 등 운영 예시 】

회의	위상과 목적	위원/성원	평균 안전 수 (개)	회의 주기	보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공동의 안전보건 정책 결정 최고 회의	노·사대표 각 5인 (사업주 노동조합대표 포함)	3-4개	분기 1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전 직원 대상)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실무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결정 이전에, 실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 대책 수립	노·사대표 각 2인 (사업주측은 생산담당 임원과 안전보건팀장, 노동조합은 사무장과 노동안전보건부장)	5-6개	필요시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팀별 안전보건 책임자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회의 결정사항의 이행 점검 안전보건정책 및 사업 공유 	생산 및 생산지원팀장 4인, 안전보건팀장,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부장	매우 다양	월 1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실무회의)

0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마련

● 운영규정의 마련과 이행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의 기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명문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효력이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들의 공통점은 위원들의 회의 준비 및 참석 시간이 유급 활동시간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임

✓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 위원들의 유급 활동시간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시간 보장이 미흡한 사례(Е사)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준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회의시간, 안전준비시간, 회의를 위한 이동시간, 실제 회의시간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데 Е사의 경우 실제 회의시간만 보장해서 노측이 안건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 없고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의견을 듣는 수준에 불과하여 안건의 내용도 부실하게 마련되고 있었음

05 | | 위원의 전문성 확보

● | |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과 법적 준수 사항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위원들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노·사간 오해와 마찰도 줄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내용

- ① 산업안전보건법 ② 중대재해처벌법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④ 위험성 평가 및 개선방법
⑤ 안전진단 및 현장점검 기법 ⑥ 사고조사 방법론 등

🔍 노사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 사례(F사)

▲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노사공동의 노력(노사위원 인터뷰 자료)

“회사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우리 회사의 관리감독자는 조장, 반장, 과장, 팀장까지 해당되고 얼마 전부터는 노사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로 노동부장이 관리감독자 교육에 참여해서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06 노·사대표의 필수 참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함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회의 참석이 어렵다면 회의를 연기해서라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비용이 발생하는 안건의 경우 실제 노·사 대표가 아닌 경우 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 있는 심의·의결을 위해 노·사 대표의 참석이 가능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07 정기회의 필수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여야 함

-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및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노·사간 상호존중을 통한 협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개최되어야 함

✓ 노사간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미루지 않도록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1~2회 연기되면 위원회의 위상은 낮아지며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음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된다면 노사 위원 모두 위원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사가 공동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즉시 시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사례도 있음

08 회의 결과에 대한 빠른 피드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회의 결과를 위원회 구성원을 포함한 전 직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빠르게 피드백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행력을 높이고 있음

❖ 회의 결과 공지 운영규정(예시)

- (1) 본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 (2) 사용자측 대표위원은 심의·의결사항의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회의결과에 대한 공지와 피드백이 부족한 사례(G사)

G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이 노사협의회 안건에 밀려서 형식적으로 다뤄지고 회의결과 공지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음. 노조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결과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소속 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09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회의록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회의 결과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위해 회의록은 간단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 의결사항의 경우 “검토한다”, “노력한다”로 기재하기보다는 “변경한다”, “실시한다”, “설치한다”, “완료한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
- ✓ 또한 사용자측 주도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서류상으로만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측의 관심과 안전발굴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

10 주기적 평가와 개선

위원회 운영실태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함

✓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의결사항은 잘 이행되는지,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노·사가 스스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임

참고 부록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부록

- 부록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발췌)
-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계 비교
- 부록 3.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부록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 부록 5.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 부록 6. 원하청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 부록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
- 부록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실무회의 운영 사례
- 부록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 부록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 회시

부록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발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시행령						
<p>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56 711 1134 827">사업의 종류</th> <th data-bbox="1134 711 1297 82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56 827 1134 135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td> <td data-bbox="1134 827 1297 1359"> <p>상시근로자 50명 이상</p> </td> </tr> <tr> <td data-bbox="756 1359 1134 179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 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td> <td data-bbox="1134 1359 1297 1796"> <p>상시근로자 300명 이상</p> </td> </tr> </tbody> </table>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p>상시근로자 50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 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p>상시근로자 300명 이상</p>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p>상시근로자 50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 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p>상시근로자 300명 이상</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시행령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57 369 1143 506">사업의 종류</th> <th data-bbox="1143 369 1298 50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th> </tr> </thead> </table>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p>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p>	<p>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시행령
<p>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p> <p>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p> <p>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p>	
<p>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규칙</p> <p>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p>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시행령
	<p>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p>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p> <p>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시행령
<p>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규칙</p> <p>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p> <p>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p>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p>
<p>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 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p> <p>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 시행령
<p>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p>
<p>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p>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p>	<p>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부록 2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계 비교

안전보건협의체계 구분

구분 법 조항		건설업 외 업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제24조	도급협의체 제64조	노사협의체 제75조	산업안전보건 제24조	도급협의체 제64조
구성 의무 (○, X)	도급 있는 경우	○	○	○	● ¹⁾	● ^{1), 2)}
	도급 없는 경우	○	X	X	○	X

- 1)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제75조) 구성·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도급협의체(제64조)는 구성·운영한 것으로 봄(제75조제2항)
- 2)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제75조) 구성·운영 의무(건설공사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 협의체(제64조)는 구성·운영하여야 함

제도별 참여자 구성 기준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법 제2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 1명 3.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 1명 4.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5.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 가능) <p>※ 도급협의체(법 제64조)를 구성시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포함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 1명 이상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p>※ 도급협의체(법 제64조) 구성시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포함 가능</p>
도급협의체 (법 제64조)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노사협의체 (법 제7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 한정)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p>※ 합의 시 ↳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p>
	합의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참여 가능(법 제64조제3항)	

부록 3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62호, 2020. 1. 15.〉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별표 2]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부록 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회사로고]	규 칙	문서번호	GKR-709
		시행일자	2022.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개정번호	5
		페이지	1/5

제정/개정 이력사항

개정번호	제/개정 일자	제/개정 사유
0	2001.02.01.	제 정
1	2003.03.20.	개 정
2	2006.03.22.	개 정
3	2021.01.01.	개 정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위원회 구성
- 제3장 위원회 운영
- 제4장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사의 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을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위원” 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위원” 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실무위원” 이라 함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4. “간사” 라 함은 회의록 작성 및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용 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제·개정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5조(구성) 본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인 이하의 동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업주가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임명되어 있지 않을 시 그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사업장의 경영 및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간사 - 쌍방이 각 1인을 둔다.
4. 위원의 변경은 대표위원이 위원의 변경 시 7일 이내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본 위원회는 사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1/4분기(2월), 3/4분기(8월)는 사용자측이, 2/4분기(5월), 4/4분기(11월)는 근로자측이 교대로 맡는다.(※ 또는 위원장은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맡는다)
-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 (3)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 (4)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전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 외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제7조(심의·의결사항)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을 심의·의결하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의결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집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7) 안전보호장구 및 안전 장비에 관한 사항
-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9) 유해,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10) 산업재해 사후 처리 문제(보상, 기타)에 관한 사항
- (1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 (1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14) 중대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5)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 (16) 근골격계, 뇌심혈관 질환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 (17)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노·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 (1) 회사는 위원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며 제7조에 정하는 직무수행과 조사 활동을 보장한다.
- (2)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3) 사업주는 현장점검 활동 등을 통한 근로자의 요청 및 의견 취합, 회의를 위한 사전 안전준비, 근로자위원 간의 논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의 조사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 (4) 회사는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시) 양측 위원이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10조(회의) 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1) 정기회의 :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 (2) 임시회의
 -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개최한다.
 - 2) 중대 재해 발생 시
 - 3) 재해 발생 및 재해 위협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 4) 위원장 및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 시
- (3)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회의 소집 및 회의 성립)

-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2)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전, 참석 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지회에 통보하고 소집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조합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으로써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4) 회의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2조(회의 불참방지)

- (1)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2)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사용자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위원회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 투표 후 양측 대표 위원이 협의한다.

제14조(부결 시 조치) 회사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참고인의 출석)

- (1) 노·사 양측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출석을 요청 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 (1)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갖는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 3) 회의 내용, 심의, 의결사항
 - 4) 기타 토의사항
- (2)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17조(회의 결과 공지)

- (1) 본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 (2) 사용자측 대표위원은 심의, 의결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 위원 전원의 확인 후 보고토록 한다.

제19조(권 한)

- (1) 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나 유해한 작업환경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2)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한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제20조 (설치)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21조(구성) 실무위원회는 사용자측 2인, 근로자측 2인으로 구성한다.

- (1) 사용자측 실무위원 - 안전보건업무담당책임자(생산담당 임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근로자측 실무위원 - 안전보건업무담당책임자(노동조합간부)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3) 간사 -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선임한다.
- (4) 필요시 당해 안전과 관련된 관리감독자를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22조(운영) 노·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2일 이내 개최한다.

제23조(기타)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로 시행한다.

부록 5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1 안전근로협의체의 개념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이하 “원청업체”라 함)이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이하 “하청업체”라 함)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구성·운영하는 원·하청 노사 통합 안전근로협의체(사업장 단위로 운영)

예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상시 100명 이상인 영흥화력발전본부, 삼천포 화력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영동예코발전본부, 여수발전본부 등 5개 작업장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 안전경영위원회는 사업(공공기관 본사) 단위로 운영하는 안전경영 관련 심의 기구(한국남동발전의 경우 본사에 설치하여 운영)

2 근거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 관계부처 합동)

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③ (통제) 참여형 통제 시스템 마련

□ 외부참여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로 운영(안전지침 제정, '19.3)(기재부·각 부처)

* ('19.4) 발전5사 → ('19.하)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확산

- (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작업장별로 원청 노사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하청 노사도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로 개편**하여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하청간 협의를 강화(안전지침 제정, '19.3)(기재부·각 부처)

* 상시 10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 분기별 개최

** (現) 원청의 노사로 구성 → (改) 원·하청 노사로 구성, 산인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같음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1.1.18., 기획재정부)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적용 대상

-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장)
 -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19년 기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중점기관 32개소 포함 총 97개 기관)
- ② ①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③ ②의 사업(장) 중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
 - *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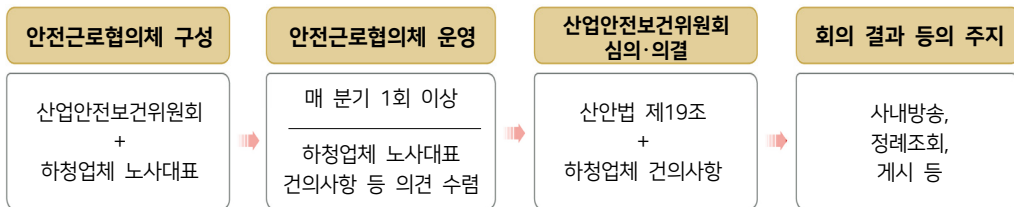
- 본사 등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 적용대상 여부는 본사 기준이 아닌 작업장(장소적 기준) 기준으로 판단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원·하청업체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1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협의체(매2월 1회)를 운영하므로 적용 제외

4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방법

-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건의사항이 원청업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아니하여(공공기관 불시점검(’19.1월) 결과)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청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임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하청업체 노사 대표로 구성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제외
 - * 3개월(산보위 운영주기)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

5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방법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되,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 (회의개최) 매 분기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운영
- (하청업체 노사대표의 역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① 개선요청 사항, ② 애로·건의사항, ③ 차별 등 의견 개선 및 개선요청
 - 원청업체는 ①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산재예방계획, ② 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③ 수급인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을 포함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심의·의결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되, 건의사항 등이 의결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불이익 금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 불이익 신고시 산업안전보건 감독대상 우선 선정

부록 6 | 원하청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회사로고]	규 칙	문서번호	GKR-709
		시행일자	2022.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개정번호	6
		페이지	1/2

제정/개정 이력사항

개정번호	제/개정 일자	제/개정 사유
0	2001.02.01.	제 정
1	2003.03.20.	개 정
2	2006.03.22.	개 정
3	2021.01.01.	개 정

목 차

- 제1장 총 칙
- 제2장 위원회 구성
- 제3장 위원회 운영
- 제4장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하청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사의 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1) 위원회의 원청업체 노사대표는 동수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에는 사업장의 경영 및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2) 협력업체의 노사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협력업체: 모든 협력업체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각 1명)

* 단, 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제외

-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모든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각 1명(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제외). 과반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직무)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로 정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사업장내 협력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장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로 시행한다.

부록 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

20**년 제**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위 원 장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여위원

회사측 위원			노동조합측 위원		
직위	성명	확인	직위	성명	확인

회의 결과

연번	안전명	논의결과	담당부서/담당자	처리기한
1				
2				
3				
4				
5				

20** 년** 월** 일

회사대표*** (인)
근로자대표*** (인)

부록 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실무회의 운영 사례

1) 실무회의 회의자료

2021년 산업안전보건 제1차 실무위원회 회의자료	
1. 회의 일시: 2021년 02월 03일(수) 13:00~	
2. 회의 장소: 생산회의실	
회의 안건	안전 설명
1) 전 분기 의결사항 추진현황보고	- 별도 자료 참조
2) 안전보건 점검사항 추진현황보고	- 별도 자료 참조
3) 유해요인조사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조사주최는 2년마다 노·사 윤번제로 한다. 유해요인조사 지회실무위원 1인에 대하여 4/1부터 개선완료 시까지 보장하며 지회 실행 및 개선위원의 조사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단, 연장근로 시간 포함) 회사는 지회 노안, 실행, 개선위원이 유해요인조사에 필요한 회의 및 교육을 요청 할 시 경비, 시간을 보장한다. 근골실무대책위원회 및 개선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근골노·사대책위원회 회의는 임시 회의로 월1회 개최한다. 조사기관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섭외한다. 조사공정은 근골노·사실무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 증상유무파악 설문지 양식과 내용은 지회의 제출한 증상설문지양식을 검토하여 노·사가 함께 결정한다. 과거 유해요인조사 적정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및 근골, 뇌심예방관리시스템 적정성을 평가하며 유해요인 발생원인 종합 진단, 증상환자 파악하여 원인제거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조사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각종 규칙에 따르며 의결된 시기부터 적용한다.</p>
4) A/T공조기 운, 냉방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p>온냉방장치 기능이 되는 것으로 교체하고 송풍구 크기 조정하여 작업자 전신에 급기가 가능하도록 조정 지금 현재 열/선풍기가 바닥에 방치됨에 따라 전선으로 인해 대형안전사고 우려됨.</p>
5) 유해, 위험작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p>(1) 소음 법적 기준치는 85데시벨 (2) 90데시벨 초과공정에 대해 비치/계시 당해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보호구 착용방법, 그 밖에 소음건강장애 방지에 필요한 사항</p>

2) 전 분기 산안위 및 실무회의 의결사항 추진현황 보고

작성일자: 2021년2월3일(수)

No.	심의 의결 사항	진행 내용 검토			완료 진행 미결	회의 일정
		회의 세부 사항	예정일정	담당팀		
1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하반기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운영한다.	지속적	보건 관리자	진행	2020.11.11 6차 실무회의
2	안전보건 점검사항 추진현황 보고	생산관련 팀장 관리감독자는 현장 점검 CHECK SHEET로 1회/주 이상 점검한다.	2020.11.1	생산팀장	완료	2020.1.13 1차 실무회의
5	M1가류 공정 몰드 이형제 자동살포기 설치에 관한 사항	추후 재 논의한다.	검토 중	벨트 생산팀	진행	
6	국소 온냉방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추후 재 논의한다.	검토 중	안전 보건팀	진행	
7	T5 멘드릴 및 절단칼날 보관대, 자동라인 사다리 고정식교체 및 LOTO에 관한 사항	(멘드릴 및 절단칼날 보관대) 자동라인 사다리 및 LOTO는 개선한다.	2021.3.30	생산 지원팀	진행	
9	2012년 안전보건 관리 추진(예산)계획서에 관한 사항	회의시 제출한 계획서 의결됨	2020.10.7	안전 보건팀	완료	2020.12.3 2020년 4/4분기 정기 산안위
10	종합건강검진기관 관련에 관한 사항	실무에서 검토한다.	2020.12.9	노·사 합동	진행	
11	물류창고 앞 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개선하되 회사에서 개선 추진한다.	검토 중	안전 보건팀	진행	

3) 실무회의 회의록

*** ^(주) 2021년 산업안전보건 2차 실무회의록		
회의 일시	2021년 3월 29일 (월) 13:00 ~ 15:30	
회의 장소	사내 3층 생산회의실	
참석 위원	회사측 산안 위원 : 2명, 간사 1명	조합측 산안 위원 : 2명
회의 내용		
회의 안전 및 심의 사항		의결 사항
1. 노·사 상호 인사		
2. 회의 안건		
1) 전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추진현황보고		보고
2) 안전보건점검사항 추진현황보고		
- 미결된항목에 대한 개선 일정을 3/27 한 조합에 통보한다.		
3) 유해요인조사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조사주최는 2년마다 노·사 윤번제로 한다.		의결
(2) 유해요인조사 지회실무위원 1인에 대하여 4/1부터 개선완료 시까지 보장하며 지회 실행 및 개선위원의 조사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단, 연장근로 시간 포함)		의결
(3) 회사는지회 노안, 실행, 개선위원이 유해요인조사에 필요한 회의 및 교육을 요청 할 시 경비, 시간을 보장한다.		의결
(4) 근골실무대책위원회 및 개선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의결
(5) 근골노·사대책위원회 회의는 임시 회의로 월1회 개최한다.		의결
(6) 조사기관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섭외한다.		의결
(7) 조사공정은 근골노·사실무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		의결
(8) 증상유무 파악 설문지 양식과 내용은 지회의 제출한 증상설문지양식을 검토하여 노·사가 함께 결정한다.		의결
(9) 과거 유해요인조사 적정성, 조사결과, 조치사항 및 근골, 뇌심예방관리시스템 적정성을 평가하며 유해요인발생원인 종합 진단, 증상환자 파악하여 원인제거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의결
(10) 본 조사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각종규칙에 따르며 의결된 시기부터 적용한다.		의결
4) A/T공조기 온, 냉방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 온냉방장치 기능 가능한 기기는 추후 논의하고 작업자 원하는 위치에 콘센트를 4/30한 설치한다.		의결
5) 유해, 위험작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 우선적으로 90데시벨 초과공정에 대해 당해 작업장소의 소음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보호구 착용방법, 그 밖에 소음건강장애 방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3/30한 게시한다.		의결

부록 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예시

* 각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수행 정도가 클수록 점수를 높게 평가합니다.

항목	점수					
	0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총점	() 점					

점수 평가 방법

총점 40점 미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점수가 0-1점 밖에 안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이 매뉴얼이 제시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총점 40점 이상 60점 미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되었나요? 2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준 항목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총점 60점 이상 80점 미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나은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점 80점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되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의 회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 1-1.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1-2.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1-3. 본사에서 인사·재무·회계를 관리하는 물류센터를 A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하고 노사합동안전점검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 1-4. 인사·회계 등의 독립성이 없는 지점 등을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해야 하는지
- 1-5.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원회로 볼 수 있는지
- 1-6.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인지 여부
- 1-7. 행정시장이 근로자 채용,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사업주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 1-8.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 ○○연구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구성

- 2-1.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이 대표자가 지명한 자는 근로자위원에 해당되는지
- 2-2.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노조규약에 의해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2-3. 2개의 병원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을 노동조합에서 갖는지 여부
- 2-4. 단일노조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나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는지 여부 등
- 2-5.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그 임기가 보장이 되는지
- 2-6.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의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2-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의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되는지
- 2-8.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방과후 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 인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 2-9.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 2-10. 근로자위원 선정 시 근로자위원의 범위, 직종별 배정 비율,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 등 선출방법
- 2-11.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선정 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해야 하는지
- 2-12. 지역건설노조대표가 공사현장과 고용관계가 없고,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 2-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특정 직렬에만 국한된 경우
- 2-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임기, 자격 유효 등
- 2-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무 대리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 공동위원장 2명 모두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1년 내내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 2-16.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여부
- 2-17.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물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사용자위원 구성

- 2-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을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 2-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은 직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 2-20.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 2-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 5명 중 안전관리자를 2명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 3-2.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노사위원 대표간의 합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보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 3-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미 실시 하였을 때 사업주의 법 위반인지
- 3-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1회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등
- 3-5.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를 게시하였는데 철회해야 하는지 여부 등
- 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에 관련 사항

- 4-1. 사측의 징계로 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동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심의·의결사항은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등

- 4-2.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것도 심의·의결 가능한지
- 4-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하려고 하는데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 4-4.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자택에서 원격으로 수행하는 것과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 4-5.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등'의 안전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 4-6.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협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타사항

- 5-1.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 5-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게 된다면 법 위반인지
-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13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여부 판단

1-1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Q 질 의

-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으로서 도급인 대표자·관계 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96, 2001.8.24.)

1-2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Q 질 의

- 1.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2.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업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해도 되는지
- 3.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A 회 시

■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다만, 1차 금속제조업 등 일부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질의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질의 3 회신내용〉

- 또한 질의 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다면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전정책과 68301-529, 2003.6.30.)

1-3

본사에서 인사·재무·회계를 관리하는 물류센터를 A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하고 노사합동안전점검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Q 질 의

- (주)△△의 전무는 본사 소속으로 직제상 위 회사의 A, B, C, D공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및 전국 물류센터를 관장하며 A공장에는 2일/1주 근무하며 A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매분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물류센터는 전국 11개소로 전체 인원은 80명이며 인사, 재무, 회계는 본사에서 관리

1. A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노동조합)는 본사 소속인 전무가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므로 본사 소속의 전국 물류센터를 노·사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하고 A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2. 위원장인 전무가 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고 A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물류센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포함을 제외할 수 있는지

A 회 시

■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또는 포함 여부는 위원장의 소속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물류센터 및 A공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당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기 질의 1 회신내용에서의 결과로서 해당 물류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681, 2011.4.6.)

1-4

인사·회계 등의 독립성이 없는 지점 등을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해야 하는지

Q 질 의

- 근로자 수가 본사 31명, 각 지점 11명 이하, 각 유통센터 24명 이하, 가공공장 15명으로 현재 본사 및 지점, 유통센터, 가공공장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진정조사 결과 각 지점과 유통센터, 가공공장은 인사와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
- 위 사업장의 경우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4927, 2013.12.31.)

1-5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원회로 볼 수 있는지

Q 질 의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A 회 시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10.16.)

1-6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포함되나

-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됨

1.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2. 소속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영업 등으로 인해서 외근하는 분들이 있고 보험 설계사,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건물관리와 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된 노동자, 식당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3.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과 금융업 및 보험업종이 다른 개념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금융업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지

A 회 시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를 말함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987, 2014.11.3.)

1-7

행정시장이 근로자 채용,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사업주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Q 질 의

- 행정시(○○시)장은 근로자 채용,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실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그 관할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 근로양태와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와 규모·조직운영·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봄
- ○○○시는 □□□□을 위한 특별법상 △△도의 관할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로서 원칙적으로 △△도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근로양태와 노무관리 등이 명확히 구분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독립성 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도)는 행정시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1056, 2020.3.4.)

1-8

연구개발업에 해당되는 ○○연구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Q 질 의

1. ○○연구소(연구개발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모두 운영해야 하는지

A 회 시

■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으나,
 - 귀하의 질의 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질의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간의 대체, 같음 등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통합운영할지 여부는 동법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산재예방지원과-922, 2021.11.09.)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구성

2-1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이 대표자가 지명한 자는 근로자위원에 해당되는지

Q 질 의

1.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인지
2.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 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은 경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A 회 시

- <질의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할 것임

〈질의2 회신내용〉

-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 68307-200, 1998.3.12.)

2-2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노조규약에 의해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해 무한정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 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전정책과 68301-4, 2003.1.4.)

2-3

2개의 병원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교체권한을 노동조합에서 갖는지 여부

Q 질 의

■ ○○대학교병원(이하 '본원')과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1. 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본원 소속근로자가 △△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임기 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지

A 회 시

■ <질의 1, 3 회신내용>

-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질의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병원이 동 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병원 소속근로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31, 2012.1.19.)

2-4

단일노조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나 복수노조가 된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는지 여부 등

Q 질 의

1. 기존 단일 S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회사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2006.7.14)은 복수노조를 예상하고 제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현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S 노동조합이 3개의 복수노조로 분리된 현재에도,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장위원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대표권을 갖게 되는지
2. 질의 1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은 사측과 S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한 이후에도 대표권과 관련된 효력은 사측과 S 노동조합에게만 미치는지
3. 질의 2와 관련, 사업장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S 노동조합의 지회만을 의미하고, 다른 노조의 지회를 의미하지 않는지
4. ○○산하 센타와 사업소의 경우 그간의 경영관행과 산안법상의 사업장단위 개념으로 볼 때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한데 이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5. M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은 아니지만 일부 분과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기준, 과반을 차지하였다면 그 분과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권을 갖는지
 - 만약 갖는다면 분과나 사업장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지
6. 양 노조가 과반이 되지 않을 때, 사측에서 양 노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을 요구했는데 한쪽에서 이를 거부 할 경우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그리고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고, 근로자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A 회 시

■ <질의 1, 2, 4, 5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귀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와 ‘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첨부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야 함
- 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산안법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별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됨
- 만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면 될 것임

<질의 3 회신내용>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됨

〈질의 6 회신내용〉

- 사측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임

〈질의 7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대표 구성 후 그 유효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925, 2013.5.9.)

2-5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그 임기가 보장이 되는지

Q 질 의

- 2016.5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기 3년)를 구성하였으나,
 - 2017.4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A 회 시

- 타법과 달리 산안법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

- 사업장 내 관련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운영 중이므로 이는 적절한 운영방법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구성의 원칙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5조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정하는바, 근로자대표에 대해 구성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구성 당시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는 새로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618, 2017.5.29.)

2-6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의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Q 질 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및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A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48, 2018.1.22.)

2-7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의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되는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로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5.21.)

2-8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방과후 학교전담, 교무행정 보조 인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Q 질 의

-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종의 근로자(방과후 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나요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법 제24조)이 적용되는 현업 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별표 2]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의 주요 업무 내용이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면 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 근로자대표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측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795, 2019.8.5.)

2-9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Q 질 의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17, 2020.1.17.)

2-10

근로자위원 선정 시 근로자위원의 범위, 직종별 배정 비율,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 등 선출방법

Q 질 의

1. △△대공원 근로자위원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위원을 각 직종별 어떻게 배정해야 하는지
3.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수 2개 노조의 구성원 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넘는 경우, 2개 노조 대표자 협의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노조 상호 간 의견 불일치 등),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지

A 회 시

■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등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대공원은 ‘공공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 규정이 적용되고,
 -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무원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위원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면 됨

〈질의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토록 하고 있으며(시행령 제35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24조)
-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게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직종별 비율을 감안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3, 4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민주적 절차 없이 다수 2개 노조의 대표자 간 협의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를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권한 주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근로자대표 선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투표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선정된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1057, 2020.3.4.)

2-11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해야 하는지

Q 질 의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 1)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 산정은 현업업무 종사자만이 해당됨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별표 2] 초·중·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산재예방정책과-1029, 2020.3.2.)

2-12

지역건설노조대표가 공사현장과 고용관계가 없고,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Q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지역건설노조의 대표가 당해 건설현장과 고용관계가 없고 당해 건설현장 노조원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이나 분회, 지회 등 현장 조직이 없어 대표자가 없는 경우
 - 위 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대표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 2.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의한 “노사협의체”의 경우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들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전체 근로자 대표의 선출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규정을 준용하는지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 시

-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 귀 질의의 지역건설노조가 규약에 의하거나 임의로 당해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지명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가 인정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질의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의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법 제35조 제1항제1호를 준용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중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45, 2020.12.2.)

2-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특정 직렬에만 국한된 경우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편중되는 것이 가능한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경우 근로자의 직렬·업무와 관련된 선정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11.09.)

2-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임기, 자격 유효 등

Q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이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3. 근로자 250명 중 180명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후 시간이 지나 근로자가 450명으로 늘어났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180명)가 그대로 인정되어 근로자대표 자격이 유효한지
4.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후 시간이 지나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자격을 잃을 시 근로자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
5. 질의 1에서 말한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했을 시 해당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유효한지

A 회 시

■ <질의 1, 5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구체적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 구성 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질의 2, 3, 4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자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운영 규정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할 수는 없음

(산재예방지원과-957, 2021.11.12.)

2-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무 대리 횟수 제한이 있는지, 공동위원장 2명 모두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1년 내내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
- 이 때 공동위원장 2명 모두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1년 내내 위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횟수 제한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법 취지상 직무 대리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1년 내내 위원장 직무를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대표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988, 2021.11.16.)

2-16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여부

Q 질 의

-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A 회 시

-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 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를 판단함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별표 2]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산재예방지원과-1126, 2021.12.1.)

2-17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물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Q 질 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함
- 상시근로자 수 2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때 투표로 선출되는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물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A 회 시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규정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하면 됨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주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사전에 공지한 민주적 절차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지원과-1125, 2021.12.02.)

사용자위원 구성

2-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을 사용자 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관련,
 - 사업주는 법인이나, 교육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해석하여 소속 직원(국장·과장 등) 중 사업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로 적용 가능한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2조 제4호) 법인사업체는 법인이 사업주이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사업주에 해당 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그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의 대표자’로 볼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8.27.)

2-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은 직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1.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2.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이며,

-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3.31.)

2-20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Q

질 의

-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35조제2항)
- 질의 상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자격으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는 없음
- 다만,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부서의 장으로 보고,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용자위원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55, 2021.11.12.)

2-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5명 중 안전관리자를 2명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5명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한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질의하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질의 상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성 조건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11.16.)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절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내전자문서’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주지 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안전정책과 68301-381, 2003.5.9.)

3-2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노사위원 대표간의 합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로 보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Q 질 의

-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방법을 “노·사위원의 의견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로 본다”라고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위원의 의견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시행령에 위반되므로 변경해야 함

(안전정책과 68301-423, 2003.5.22.)

3-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미 실시 하였을 때 사업주의 법 위반인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 회사의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한 상태로
 1.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키로 일정까지 확정되어 통보하였으나 조합에서 일방적인 불참으로 미 실시한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측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라도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개최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회 시

- <질의 1,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안전정책과-3480, 2004.6.28.)

3-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1회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등

Q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120억 미만) 9인의 인원 구성이 되지 않아 사업주측 인원이 3명 밖에 안되면 근로자측도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 2. 산업안전보건법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현장은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해야 되는지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3항에 의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시 안전관리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를 참석시켜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는 몇 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A 회 시

- <질의 1 회신내용>
 - 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임

- 동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와 사용자위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해당 사업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질의 2 회신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3 회신내용>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으로서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기마다 개최하여야 함

(안전정책과-3999, 2004.7.20.)

3-5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를 게시하였는데 철회해야 하는지 여부 등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와 관련하여 2005.4.6., 5.10일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2005.5.18., 5.23에 개최한 위원회 실무회의 개최결과 회의록을 사측위원만의 날인을 받아 게시판에 게시하였음

1.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위원의 승인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게시했다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지
2.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의결될 수 없는 안전인데 회의록은 어느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A 회 시

■ <질의 1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는 사내 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결과는 이를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

〈질의 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의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고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안전정책과-3217, 2005.6.3.)

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위원의 효과적인 참석,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49, 2021.11.12.)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에 관련 사항

4-1

사측의 징계로 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동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심의·의결사항은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등

Q 질 의

1. 사측의 징계로 근로자대표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동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2. 사측이 위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노측과의 협의(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3. 현재 사측의 징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준용하여 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A 회 시

■ <질의1 회신내용>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노조위원장)가 법상 근로자대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사측의 징계로 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근로자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해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사료 됨

〈질의2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사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및 근로자위원,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포함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 근로자위원 불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동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없을 경우라도 사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질의3 회신내용〉

-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질의1에 대한 답변 참조)할 수 있으나,
 - 사측의 파면, 해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205, 2010.3.11.)

4-2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것도 심의·의결 가능한지

Q 질 의

■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일방(노측 또는 사측)에서 상정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한지

- 1) 소음성난청 판정자 사후조치 및 재해보상 관련 건, 2) 종합건강검진기관 선정 건, 3) 뇌심혈관계질환자 발생시 산재처리 건, 4) 해외파견자 보호구 지급 관련 건, 5) 식당 위생점검 실시 건, 6) 부속의원 일반진료 의사 채용 건 7) 천정크레인 사각지대 카메라 설치 건, 8) 직결식 방진마스크 신규제품 사양 선정 건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음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이에 따라 안전 중 1)(재해보상 제외), 2), 6)번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사항은 노사 간 별도의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않는 한 심의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588, 2010.3.30.)

4-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Q 질 의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검진을 외부 전문 기관에게 의뢰 예정 시 이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심의·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883, 2021.11.03.)

4-4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자택에서 원격으로 수행하는 것과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Q 질 의

-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가 자택에서 원격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근로자가 자택에서 인터넷 원격교육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921, 2021.11.9.)

4-5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 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등'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Q 질 의

-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4-6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협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Q 질 의

■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협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옥외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52, 2021.11.12.)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타사항

5-1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원회의 신분 및 처우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Q 질 의

■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에는 제9조에 “위원회의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로 명시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이 소정근무 시간 중의 회의 참석 시간뿐만 아니라 비번 또는 휴일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에 대해 명시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노사협의회와 같이 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소정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비번 또는 휴일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3. 만약 특별한 법적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등하게 처우를 해야 한다면 그 밖의 노사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든 위원회(예를 들면, 후생복지위원회 등)의 참석 위원에 대해서도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등하게 처우를 해야 하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항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071, 2011.9.27.)

5-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게 된다면 법 위반인지

Q 질 의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정, 개정)과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였을 경우 법적 위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제38조)
- 질의내용으로 볼 때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속히 중재기구나 제3자에 의한 중재절차를 거치기 바람

(산재예방정책과-6817, 2012.12.13.)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13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Q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수가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13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에 해당되어 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행정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521, 2017.9.2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발행일 2022년 1월

기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권기섭)

제작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규석, 산재예방지원과장 김정수,
사무관 황현태, 주무관 안영곤 / 박환주 / 김시현
전문위원 허성환

디자인 및 인쇄 열림기획(주) 044)868-5055